

산업통상자원부령

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연 월 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3호는 집행기관에 따라 확대해석의 위험이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항을 정비하여 규범의 명확성을 높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"다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"에서 "따라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"로 수정(안 제6조제3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2. 19. ~ 1. 28.)

대통령령 제 호

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3호 중 “따른 제한에 위반”을 “따라 등록이 제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공사업의 등록)	제6조(공사업의 등록)
① ~ ② (생략)	① ~ ② (생략)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	③ 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 법,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<u>따른 제한에 위반되는</u> 경우	3. ----- --- <u>따라 등록이 제한되는</u> 경우